

<http://enter.yu.ac.kr>

2019학년도 수시 신입생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미래를 열어가는 밝고 강한 지역거점 대학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가. 수시모집은 최대 6회(교육대학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 횟수 산정 : 수시모집으로 실시하는 모든 전형(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포함)을 대상으로 하나의 전형에 지원 시 1회로 산정

나.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2. 이중등록 금지

※ 다음 사항 중 어느 1개 항이라도 위반한 지원자는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합니다.

가.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총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없음**

□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예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변경 예고입니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실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개시일 전일까지임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 3.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p>※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p>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내용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1
3. 지원자격	3
4. 지원방법 및 입학상담	6
5. 제출서류 및 전형료	7
6. 전형방법	9
7. 서류전형	9
8. 선발기준	9
9. 지원자 유의사항	9
10. 합격자 발표 관련 유의사항	10
11.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10

□ 별첨서식

1. 신입학 입학원서(재외국민)	11
2. 신입학 입학원서(외국인)	12
3. 수학기록표(재외국민)	14
4. 제3국 수학사유서(재외국민)	15
5. 자기소개서(재외국민, 외국인)	16
6. 학업계획서(재외국민, 외국인)	17
7. 거주기록표(재외국민)	18
8. 학력조회자료(재외국민, 외국인)	19
9. 학력조회요청서(재외국민, 외국인)	20
10. 학비조달계획서(외국인)	21
11. 비자발급용 사진(외국인)	22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재외국민, 외국인)	23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8. 9. 10(월) 09:00 ~ 9. 12(수) 17:00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 연락처 : 053-810-1085 ※ 우편접수는 9. 12(수)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함
합격자 발표		2018. 11. 9(금)	○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
합격자 등록	등록확인 예치금	2018. 12. 17(월) ~ 12. 19(수)	○ 대구은행, 국민은행
	최종 등록금	2019. 1. 30(수) ~ 2. 1(금)	

2. 모집단위

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최대선발 가능인원
문 과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5
		중국어문화학과		6
		일어일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8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6
		철학과		3
		역사학과		6
		문화인류학과		3
		심리학과		3
		사회학과		3
		언론정보학과		3
자연과학	자연	수학과		4
		통계학과		4
		물리학과		3
		화학생화학부	화학, 생화학	9
		생명과학과		3
공 과	자연	건설시스템공학과		7
		환경공학과		5
		도시공학과		3
		신소재공학부		12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융합화학공학, 에너지화공	24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
기계 IT	자연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27
		전기공학과		7
		전자공학과		12
		컴퓨터공학과		10
		정보통신공학과		10
		자동차기계공학과		9
		로봇기계공학과		6

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최대선발 가능인원
건축학부	자연	건축학부	건축학,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12
정치행정	인문·사회	정치외교학과		4
		행정학과		5
		새마을국제개발학과		4
		경찰행정학과		4
상경	인문·사회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	11
		무역학부	무역학	10
경영	인문·사회	경영학과		12
		회계세무학과		6
생명응용과학	인문·사회	식품경제외식학과		5
		원예생명과학과		3
	자연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
		식품공학과		4
		생명공학과		7
		의생명공학과		3
생활과학	자연	가족주거학과		5
		식품영양학과		5
	예·체능	체육학부	체육학, 무용학	9
	자연	의류패션학과		5
디자인미술	예·체능	미술학부	회화	8
			트랜스아트	
		시각디자인학과		6
		산업디자인학과		3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	
음악	예·체능	음악과		5
		성악과		3
		기악과		6

- ※ 총 모집인원은 50명이며, 학부(과)·전공별 최대선발 가능인원(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전교육과정이스주재외국민 및 전교육과정이스외국인은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우리 대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만을 선발합니다.
- ※ 학부 입학생 전공 결정 : 학생의 희망과 우리 대학교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결정합니다.
- ※ 음악대학 학과별 세부분야 : 음악과(작곡, 국악), 성악과(성악), 기악과(피아노, 관현악)

3. 지원자격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자격구분	자격요건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공통학력요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재외국민	영주교포자녀 (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자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영주교포자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5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최소 4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5년(10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5년	5년	5년	-	5년	5년	5년	
	대학전임교직원자녀 외국에 공식 파견되어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대학전임교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	2년	2년	-	-	
	해외근무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	2년	2년	-	-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	2년	2년	-	-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근무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	2년	2년	-	-	
	유치과학자및교수요원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	2년	2년	-	-	
	현지법인근무자또는자영업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현지법인 근무자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2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개 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	2년	2년	-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12년	-	-	-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외국인	외국국적취득외국인 (한국인으로서)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한 외국인	2년	2년	-	-	-	-	국내·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12년	12년	-	-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통일부 확인		-	-	-	-	국내·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2년	12년	-	-	-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입학허용기간(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제외) :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2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단,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

가. 재외국민, 외국인의 범위

구분	내용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영주·거주·체류하는 자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학생 부모의 국적은 불문, 복수국적자 및 무국적자 제외)

나. 영주교포, 해외파견근무자, 현지법인근무자 또는 자영업자의 범위

구분	내용	
영주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에 해외이주신청을 하고, 외국에서 영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 상에 이민·이주말소 또는 국외이주신고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단, 영주권제도가 없거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에 영주하는 자는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확인 또는 관련서류 제출해야 함 	
해외파견근무자	대학전임교직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각종 학교에 재직 중인 정규 교직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p>※ 근무형태 : 외국으로 파견되어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되며, 교육, 연수 형식의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p>	
현지법인근무자 또는 자영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취업자 또는 해외 자영업 허가를 받은 현지 자영업자	

다. 지원자격 인정기준

<p>① 외국학교 인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p>② 우리나라 학제(12년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중 학 교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고등학교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p>③ 고등학교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고교졸업은 2018년 2월까지를 인정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p> <p>④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 수료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
예) 중·고교과정 연속 2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교과정 연속 4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교과정 연속 6학기 또는 8학기 이상 등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중복된 학기는 이전과정의 학기에서 학제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하급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으로는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⑤ 최저 해외 재학.거주.근무.체류 기간 산정기준

- 부모의 해외영주(거주), 근무,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함
- 해외과연 근무자, 현지법인 근무자 또는 자영업자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은 심사대상이 아님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 해외거주, 근무 및 체류 기간 산정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⑥ 전교육과정 이수재외국민 및 전교육과정 이수외국인의 학력인정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년제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기준
10학년제 이하	◦ 12학년제를 기준으로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예) 초·중·고 10년 학제의 국가에서 9학년, 10학년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여야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
11학년제	◦ 12학년제를 기준으로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초·중등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 초·중등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⑦ 해외영주.거주.체류.근무기간의 정의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⑧ 재외국민과외국인의 거주(체류)기간, 학력, 월반,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외국인 한국어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어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충족자로 인정함

- 1) TOPIK 2급 이상 취득자(단,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 영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 3) 국내 4년제 정규대학 개설 한국어과정(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자

※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한국어시험 종류

종류	주관	최저학력기준	성적표 발급 유효기간
TOPIK	국립국제교육원	2급 이상 (단,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 한국어연수과정 필수 이수)	2016. 10. 1(토) ~ 2018. 9. 12(수)
영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합격	2018학년도 상반기 합격자만 인정
한국어과정(정규과정)	국내 4년제 정규대학	4급 이상	-

※ 외국인 입학자 전원은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4. 지원방법 및 입학상담

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입학팀을 방문(우편접수 가능)하여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8. 9. 12(수) 17:00** 등기우편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제출서류 송달과정의 사고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우리 대학교 내 1개 학부(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 입학상담 및 원서접수처 : 영남대학교 본관 1층 입학팀

- 1) 주 소 : (우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본관 1층 입학팀
- 2) 연락처 : 전화 053-810-1085 (팩스 : 053-810-2099)

마.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enter.yu.ac.kr>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yu.ac.kr)

바. 표준입학허가서, 사증(VISA) 발급 및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영남대학교 대외협력처 유학생지원팀 : 053-810-7884

5. 제출서류 및 전형료

가.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증명서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또는 영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입학식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는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서 (<http://www.cdgd.edu.cn>) 발급한 **会考合格 인증서 원본**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민 포함)

제출서류	구분	영주 교포 자녀	대학전임 교직원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현지법인 근무자또는 자영업자 자녀	전교육 과정이수 재외국민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민
① 입학원서		●	●	●	●	●	●	●	●	●	●
② 지원자 수학기록표(별첨서식3)		●	●	●	●	●	●	●	-	-	●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	●	●	●	●	●	●	-	●
④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	●	●	●	●	●	●	-	●
⑤ 제3국 수학기록표(별첨서식4)	-	-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	-
⑥ 자기소개서(별첨서식5)		●	●	●	●	●	●	●	●	●	●
⑦ 학업계획서(별첨서식6)		●	●	●	●	●	●	●	●	●	●
⑧ 지원자 거주기록표(별첨서식7)		●	●	●	●	●	●	●	●	-	●
⑨ 주민등록등본(전가족) (전가족 사항이 없을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만·이주말소 ·국외이주사실 반드시 포함)		●	●	●	●	●	●	-	-	●
⑩ 보호자 재직증명서 (본사 발행, 해외파견 내용 및 기간 기재)	-		●	●	●	●	●	●	-	-	-
⑪ 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현지법인근무자또는자영업자자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부·모·학생 영주권사본 (아래 *1 참조)	해당대학 총장 추천서	-	해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직접투자 승인서)	-	정부초청 (추천)서	(아래 *2 참조)	-	(아래 *3 참조)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⑫ 재외국민등록필증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학생	-	-
⑬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보호자·학생	● 학생	-	-
⑭ 학력조회자료(별첨서식8)	●	●	●	●	●	●	●	●	●	-	●
⑮ 학력조회요청서(별첨서식9)	●	●	●	●	●	●	●	●	●	-	●
⑯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서식12)	●	●	●	●	●	●	●	●	●	●	●

*1(별표1) 영주권 사본

영주권 제도가 없거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위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학한 경우는 제외)

*2(별표2) 현지법인근무자 또는 자영업자 자녀 추가 제출서류

- 1) 현지법인 근무자 : 해당국발행 법인등록증 또는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 개인 소득세 납부증명서(지원자격 기간 내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
- 2) 자영업자 : 해당국발행 사업자등록증, 개인 소득세 납부증명서(지원자격 기간 내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

*3(별표3) 북한이탈주민 추가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다만,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학력인정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2) 외국인

제출서류	구분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비고
① 입학원서		●	●	사진 3.5cm×4.5cm 1매 부착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	한국어(또는 영어) 공증 번역본 첨부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	
④ 한국어시험 성적표 (아래 * 참조)		●	●	
⑤ 자기소개서(별첨서식5)		●	●	
⑥ 학업계획서(별첨서식6)		●	●	
⑦ 학력조회자료(별첨서식8)		●	●	
⑧ 학력조회요청서(별첨서식9)		●	●	
⑨ 기본증명서	● 학생		-	국적 상실 내용 포함
⑩ 외국 국적 증명서	● 학생		● 학생	시민권 사본 또는 외국 국적 증명 서류
⑪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 해당자		▲ 해당자	중국 국적자만 해당
⑫ 학비조달계획서(별첨서식10)	●		●	
⑬ 은행예금잔고증명서(또는 송금(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	●		●	미화 \$10,000 이상 (유효기간 2018. 3. 1 이후)
⑭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정보증인	▲ 해당자		▲ 해당자	국외 체류 외국인만 해당
⑮ 수입증명서(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 재정보증인	▲ 해당자		▲ 해당자	
⑯ 외국인등록증	▲ 해당자		▲ 해당자	국내 체류 외국인만 해당
⑰ 여권사본	● 학생		● 학생	
⑱ 비자 발급용 사진 2매(별첨서식11)	▲ 해당자		▲ 해당자	사진 3.5cm×4.5cm 2매 부착 국외 체류 외국인만 해당
⑲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서식12)	●		●	

*1(별표1) 한국어시험 성적표(택일)
 1) TOPIK 2급 이상 성적표 : 2016. 10. 1(토)부터 2018. 9. 12(수)까지 응시하여 동기간 내 발급된 성적표만 인정
 2) 영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 2018학년도 상반기 합격자만 인정
 3) 한국어과정(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증명서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개설 과정만 인정

나. 전형료

- 1) KRW 100,000원
- 2) 납부기한 : 2018. 9. 12(수) 17:00까지
- 3) 납부방법 : 입학팀 접수창구에서 직접 납부, 우편환, 계좌이체

다. 전형료 환불

- 1) 입학원서 접수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우리 대학교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반환계좌로 이체
 - 우리 대학교 직접 방문
- 4)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반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구분	모집단위	전형방법	배점	평가방법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포함)	전 모집단위	서류전형	합격/불합격	서류전형심사(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수학능력 등)
외국인	전 모집단위	서류전형	합격/불합격	서류전형심사(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수학능력, 한국어시험성적 등)

7. 서류전형

가. 서류전형심사 대상자 : 지원자 전체

나. 평가항목

- 1) 지원자격 : 입학원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격구분별 지원자격을 평가
- 2) 수학능력 :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수학능력을 평가

다. 서류전형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면접이나 실기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선발기준

가. 모집단위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나. 아래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1) 제출서류 미비자
- 2) 지원자격 및 수학능력 미달자
- 3) 한국어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미달자(외국인만 해당)

다. 모집단위별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하며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별도 사정원칙을 적용합니다.

라. 미등록, 등록금 환불 등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순위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총원할 수 있습니다.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하려는 대학, 학부(과) 및 전공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별첨 서식을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문서 편집기 사용 가능)한 후 제출합니다. 작성오류, 판독불가,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출력한 입학원서에 본인의 증명사진(3.5cm×4.5cm)을 부착합니다.

라. 제출서류

- 1) 원본 서류 제출 :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제출서류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 2) 공증 서류 첨부 :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또는 영어)로 작성된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3) 제출서류 정리순서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4) 제출서류 접수 확인 시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2018. 9. 28(금)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포기자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 5) 제출된 입학원서(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전형료 납부

- 1)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와 함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2) 계좌이체 이용 시 입학팀(053-810-1085)으로 문의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하여야 하며, 송금인란에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성명(국외에서 송금 시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외국에서 전형료를 송금할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8. 9. 12(수) 17:00 까지 해외 은행 등에서 행한 송금 확인증을 팩스(053-810-2099)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별첨서식에 기입한 내용은 제출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사. 기타 유의 사항

- 1) 제출서류의 지원자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전형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입학팀(053-810-1085)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합격자 발표 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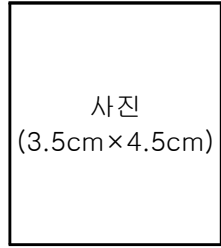
- 가.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나. 등록금 납부 :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에서 출력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다. 표준입학허가서 배부 : 등록금 영수증을 제시한 외국인 합격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배부합니다.
- 라.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등록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입학식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우리 대학교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및 입학의 취소를 합니다.
- ※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마감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예외적으로 입학식 이후 제출 인정
- 마.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 외국인 합격자는 우리 대학교 유학생 관리 정책에 따라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와 ‘유학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등록금 납부 시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유학생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우리 대학교 유학생지원팀(053-810-7884)의 안내에 따라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및 입학의 취소를 하고,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 나.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에 해당됩니다.
- 라.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마.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영남대학교 입학원서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외국인특별전형)



1. 인적 사항		수험번호		
구분		한글명		영문명
1. 성명	성			
	이름			
2. 국적				
3. 출생국가				
4. 출생지				
5. 재외동포여부(해당란에 ○표)		Y () N ()		
6. 생년월일		년	월	일
7. 외국인등록번호		-		
8. 성별(해당란에 ○표)		남 () 여 ()		
9. 주소	한국 주소(한글표기)			
	본국 주소(외국어표기)			
10. 전화번호	한국 전화번호			
	본국 전화번호			
11. E-mail				

2. 지원 사항			
1. 지원 대학	영남대학교	대학	
2. 지원 학부(과)		학부(과)	
3. 지원 전공		전공	
4. 지원 유형(해당란에 ○표)	※ 체육학부, 미술학부 지원자만 해당 외국국적취득외국인 () 전교육과정이스라엘외국인 ()		

3. 학력 사항					
교육과정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수업연한	학적구분 (졸업/졸업예정 등)
초등					
중등					
고등					
한국어연수기관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제3국 수학사유서

※ 중·고교 기간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한글성명		영문성명	
지원대학		지원학부(과)	
학생 재학국가		보호자 근무국가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 (학년 학기)		

지원자 성명

(서명)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학 업 계 획 서

한글성명		생년월일	
지원대학		지원학부(과)	

1.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분야 :
2. 학업계획 :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 거주기록표

1. 거주(체류)기간 <학생의 특례인정기간 중 거주(체류)기간에 대한 정보>

구분	거주(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지원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본인 총 거주(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구분	거주(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부친 총 거주(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구분	거주(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모친 총 거주(체류)기간 : 년 개월 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거주(체류)기간과 일치하도록 작성

2. 부모의 해외근무(영주)정보 <학생의 특례인정기간 중 근무.영주에 대한 정보>

구분	성명	직업	직장명	해외근무(영주)									
				근무(영주)국가명	근무(영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최초 근무(영주)국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작성, 외국근무기간은 보호자 경력증명서 상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작성

3. 외국 영주권자 기재사항

구분	성명	국적	국가명	영주권 번호	취득일	비고
지원자						
부						
모						

지원자 성명

(서명)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 학력조회자료

학교명	주소	학년	홈페이지	전화번호
		재학기간	e-mail	팩스번호
		학년 학기 ~ 학년 학기 년 월 ~ 년 월		
해당국 학제 : 초 () - 중 () - 고 () 해당학교 학기제 :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 학기 ~ 학년 학기 년 월 ~ 년 월		
해당국 학제 : 초 () - 중 () - 고 () 해당학교 학기제 :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 학기 ~ 학년 학기 년 월 ~ 년 월		
해당국 학제 : 초 () - 중 () - 고 () 해당학교 학기제 :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 학기 ~ 학년 학기 년 월 ~ 년 월		
해당국 학제 : 초 () - 중 () - 고 () 해당학교 학기제 :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 학기 ~ 학년 학기 년 월 ~ 년 월		
해당국 학제 : 초 () - 중 () - 고 () 해당학교 학기제 : 2학기(), 3학기(), 4학기()				

- ① 학교는 외국소재 학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할 것.
- ② 학교 주소는 해당국의 전체 주소를 표기할 것(국가명, Zip Code 등 포함).
- ③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할 것. 예) 한국 82-53-810-1085
- ④ 해당국 학제는 외국학교 초, 중, 고 학제를 기입할 것. 예) 한국의 경우 초(6) - 중(3) - 고(3)
- ⑤ 해당학교 학기제는 재학한 외국학교의 학기제에 (●) 표시할 것.

지원자 성명

(서명)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외국인특별전형
학비조달계획서**

■ 지원사항

지원자 성명	구분	성	이름
	한글성명		
	영문성명		
지원 학부(과)			

■ 유학경비부담자(재정보증인) 관련사항

재정보증인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직업	
직장명 및 직위	
연간 수입	
연간 송금 가능 금액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지원자가 귀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경비 지원을 보증하며, 붙임과 같이 은행 잔고증명서(미화 \$10,000 이상)를 첨부합니다.

재정보증인 서명		작성일자	
----------	--	------	--

2019학년도 수시 신입학 외국인특별전형

비자발급용 사진

※ 본인의 증명사진(3.5cm×4.5cm) 2장을 아래의 네모칸에 각각 한 장씩 붙여주세요.

한글성명

영문성명

사진
(3.5cm×4.5cm)

사진
(3.5cm×4.5c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	모집단위(지망학과), 추가전화번호(2~6개), 출입국정보(출입국 일자·국가명), 가족사항(지원자와의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환불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학기록표, 제3국수학사유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부모의 직장 및 거주정보(출입국일자·국가명, 직업·직장명, 해외근무(영주)국가·기간, 영주권번호, 영주권취득일, 전화번호), 학력조회자료, 학력조회요청서, 재정보증인관련사항(성명, 지원자와의관계, 직업, 직장명, 직위, 연간수입, 연간송금가능금액,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 모)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에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 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제3자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등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번호/모집단위명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우리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 단과대학 및 학부(과) 학생회)	각종 행사 (예비대학 등) 안내	성명, 학과, 수험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2019년 2월 28일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비동의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대학교 학생자치기구(053-810-3721) 및 학생처 학생지원팀(053-810-1137)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입학원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총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총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전형기간,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외 선발), 본인만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2018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2019

YEUNGNAM
UNIVERSITY

2019학년도 수시 신입생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빠르고 편리한 통학!
교통편 이용안내

지하철 및 셔틀버스

- 2호선 영남대역
- 1호선 반야월역에서 영남대 셔틀버스 운행
- 3호선 용지역에서 영남대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 309, 449, 509, 609, 649, 719, 840, 909, 980, 991번 등 다수

고속도로

- 경산 IC ⇨ 경산방면 • 동대구 IC ⇨ 경산방면 • 수성 IC ⇨ 경산방면

철도

- 경산역 : 시내버스 309, 509, 609, 840, 909, 980번 등 다수
- 동대구역 :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앞 시내버스 909번

항공기

- 대구공항 : 시내버스 719번

YU 입학안내 <http://enter.yu.ac.kr>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입학팀 대표 Tel. 053-810-1090

학생부교과전형 Tel. 053-810-1082~85

학생부종합전형 Tel. 053-810-1086~89

www.yu.ac.kr